

제 1136 호
1985. 7. 15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문관
편집인 : 공보감조관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35-3337

시보

차 례

◎ 고 시	
제 464 호 : 주택개발개발구역지적승인고시	2
제 465 호 : 도시계획사업(도로포장)실시계획변경인가	2
제 466 호 : 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고시	3
제 467 호 : 무교구역제 2 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	5
◎ 공 고	
제 399 호 :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행정처분공고	5

공										
람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1350

고 시

◎ **서울특별시고시제 464 호**

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적승인고시

- 1. 건설부고시 제 227 호 ('85.5.18) 로 구역결정된 천호제 3 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 6 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(강동) 주택과와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7. 15.

서울특별시장

가. 지적승인 고시내역

- 구역명 : 천호제 3 구역 재개발
- 위치 : 강동구천호동 410번지일대
- 면적 : 6,970.평방미터

나. 도면 및 조서 : 별첨 (생략)

◎ **서울특별시고시제 465 호**

도시계획사업 (도로포장) 실시계획 변경인가

- 1. 건설부고시제 320(70.7.2) 호로 시

설결정된 도시계획도로 (신림 2 동 103 번지 도로포장공사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동시행령 제 26 조, 제 2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 위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(도로포장공사) 실시 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.

- 2.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함.

1985. 7. 15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125 의 12-126 의 1-103 의 101 간

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신림 2 동 103 번지 도로포장공사)

다. 사업의규모 : 도로포장 $B=6-12m$ $L=120m$

콘크리트포장 ($T=20cm$) $A=9.66m$

하수도 ($D=450mm$) $L=85m$

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 (관악구청장)

마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

- 착공 : 시행인가일로부터

15 일 이내

- 당초준공일 : 시행인가일로부터

85. 7. 10 일까지

○ 변경준공일 : 시행인가일로부터 85. 8.31 일까지
 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,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: 별첨.
 사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별첨
 다. 변경내용 : 토지소유자 일부변경 및 준공기한 연기

토 지 조 서

연번	소재지 지번	지목	지적	면적	입면적	실제이용상황	변경 전 소유자		변경 후 소유자	
							면적	주소성명	면적	주소성명
7	신림동 127-57	도	370 ㎡	370 ㎡	도로	370 ㎡	동대문구보문동 1가 52 박종식	152 ㎡ 218 ㎡	신림동 610-519 한종상 동대문구보문동 1가 52 박종식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66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283 호 (85.4.27) 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

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 가. 시설조서

시 설 조 서

일련번호	도 로			연장	기 점	중 점	비고
	등급	류 별	폭 원				
1	소로	2 류	8 m	240	진관내동 504-1	진관내동 59-2	신설
2				310	390-13	산 95-1	
3				520	"	508-2	
4				102	409-61	409-4	
5		3 류	6 m	86	구파발동 59번지	구파발동 56-22	

일련 번호	도		로 폭원	연 장	기 점		종 점		비 고
	등 급	류 별							
6	소 로	3 류	6 m	86	구과발동	56-23	구과발동	68-9	신설
7				104		83-9		73-1	
8				122		56-6		산 9-3	
9				84		75-1		81-3	
10				46		75-1		산 2-6	
11				39		111-2		113-5	
12				244		106-5		119-10	
13				90		83 번지		71번지	
14				26		113-20		113-6	
15				40		112-2		111-2	
16				124		진관내동 52-6		진관내동 510-18	
17				66		501-5		산 92-3	
18				190		510-2		산 89-2	
19				68		408-3		409-4	
20				40		구과발동 79-1		구과발동 107-4	
21				68		73-1		80-4	
22				47		83-4		82번지	
23				56		85-10		85-1	
24				268		87-9		83-9	
25	118	83-7	86-14						
26	116	83-6	83-9						
27	78	86-5	86-31						
28	142	114-2	115-2						
29	200	113-2	117						
30	36	119-2	121번지						
31	126	진관외동 477-5	진관외동 479-99						
32	35	462-2	462-7						
33	130	479-3	479-16						
34	83	진관내동 366-1	진관내동 388-56						

일련 번호	도 로			연 장	기 점	종 점	비 고	
	등급	류 별	폭 원					
35	소 로	3 류	4 m	90	진관내동 387-15	진관내동 388-49		
36					45	388-101		387-4
37			6 m	335	구과발동 83-6	구과발동 106-6	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67 호

무교구역제 2 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450 호 ('83.9.1) 로 사업시행인가된 무교구역 제 2 지구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도시 재개발법 제 1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(시행 기간연장)하고 동법 제 16 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1985. 7.15

서울특별시장

가. 변경인가 내용

시행기간: 기정 83.9.1 - 85.8.31

변경 83.9.1 - 85.12.31

나. 변경사유: 건축공사지연에 따른
사업기간 연장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399 호

특정업사용기자재시공업소행정처분
공 고

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 27 조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한 다음 시 공사업소에 대하여 동법제 3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조치하였 기 동법 시행규칙 제 28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.

1985. 7.15

서울특별시장

아 래

지정 번호	업 소 명	소 재 지	대표자	사 유	조치사항	비 고
31	청일설비	정농동 648-57	이공호	84.12.31까지 휴지, 미재개	지정취소	

지정 번호	업 소 명	소 재 지	대표자	사 유	조치사항	비 고
38	대진카미칼 엘지니아링	면목동 126-4	한전일	무단장소이전 소재불명	지정취소	
90	설화설비	답십리동 263-1	맹창호	"	"	
109	승진공사	목동 180-55	강승남	84.12.31 까지 유지, 미재개	"	
148	성천설비	장안동 382-9	이환구	무단장소이전 소재불명	"	
32	일성설비	망우동 513-53	선금규	기술요원미채용	시공정지 2 개월 85.7.10-9.10	
101	육천설비	장안동 200-7	김일근	"	"	
127	승진설비	면목동 369-18	김양수	"	"	
141	대경건축 설비공사	" 114-109	전양순	"	"	
145	신진설비	" 177-49	윤동석	"	"	